



#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농림수산물부공고 제2010-333호  
2010년 8월 13일 농림수산물부장관

## 1. 개정이유

악성 가축전염병 질병으로부터 우리축산업을 보호·관리하기 위하여 축산업 등록대상을 기존 4개 축종(소, 돼지, 닭, 오리)에서 기타가축 8개 축종(산양, 면양, 사슴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, 타조) 사육농가까지 확대하고, 부화업·종축업의 축산업 등록 시 갖춰야 할 시설·장비 기준을 강화하여 전염성 가축질병 발생시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축산업의 등록대상 면적 강화 및 등록대상 확대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질병으로부터 우리축산업을 보호·관리(안 제13조)

-현재 소사육 농가의 등록대상 면적을 현행 300㎡초과에서 500㎡초과로 강화(제13조 1호)

-축산업 등록대상을 4개 축종(소, 돼지, 닭, 오리)에서 기타가축(산양, 면양, 사슴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, 타조) 사육농가까지 확대(제13조 5호 신설)

나. 부화업·종축업의 축산업 등록 시 갖춰야 할 시

설·장비 기준을 강화하여 가축전염성질병 차단(안 제14조 제2항 별표1)

-부화업은 종란 훈증소독 시설, 종돈업은 담장설치, 농장밖 상하차대 설치, 후보돈 격리사 별도 설치, 종계업·종오리업은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, 종란보관실 설치 등

다. “가축사육면적당 적정사육두수”를 준수하지 않고 밀집사육 할 경우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업 등록의 실효성 확보(안 제14조 제2항 별표3)

## ◎축산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

•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(축산업의 등록 대상) 제1호 중 “300제곱미터”를 “500제곱미터”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가축사육시설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타 가축(산양, 면양, 사슴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, 타조) 사육업

• (별표1) "축산업의 등록기준"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축산업의 종류의 부화업의 시설·장비 등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종란 훈증소독시설을 설치할 것

• 종축업 중 종돈업의 시설·장비 등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종돈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

• 종돈업의 시설·장비 등 중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담장을 설치할 것

6. 상하차대를 농장밖에 설치할 것

7. 후보돈 격리사를 별도로 설치할 것

8.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추는 것

• 종축업 중 종계업과 종오리업의 시설·장비 등 중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

5. 종란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

6.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추는 것

• 가축사육업의 시설·장비 등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추는 것

### ◎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4조 제2항 (별표1)중 신설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실시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

별 표 1

축산업의 등록기준(제14조제2항 관련)

축산업의 종류		시설·장비 등
부화업		1. 부화장을 갖추는 것 2. 부화장에는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할 것 3.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4.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5. 부화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계사(鷄舍)와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할 것 6. 종란 훈증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(신설)
계란집하업		1. 계란집하장을 갖추는 것 2. 계란집하장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3. 계란집하장에는 다음 각 목의 장비를 설치할 것 가. 환기시설 나. 계란을 포장할 수 있는 장비 다. 계란의 무게를 자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선별기 라. 집하된 계란을 운반할 수 있는 장비(예 : 지게차 · 컨베이어시스템 등)
종축업	종돈업	1. 종돈사육시설을 갖추는 것 2. 종돈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3. 종돈사육시설에는 종돈분만시설 · 종돈포유시설 및 종돈육성시설을 벽 ·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4. 종돈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돈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돈 및 번식용 씨돼지의 사육시설을 양돈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에 사용되는 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할 것 5. 담장을 설치할 것 (신설) 6. 농장 외부에 상하차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것 (신설) 7. 후보돈 격리사를 별도로 설치할 것 (신설) 8.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추는 것 (신설)
	중계업	1. 중계사육시설을 갖추는 것 2. 중계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 및 환기시설을 할 것 3. 중계사육시설에는 중계의 품종별,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벽 ·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4.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(신설) 5. 종란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 (신설) 6.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추는 것 (신설)
	중오리업	1. 중오리 사육시설을 갖추는 것 2. 중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. 다만, 중오리 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할 수 있다. 3. 중오리 사육시설에는 중오리의 품종별,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벽 ·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4.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(신설) 5. 종란보관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 (신설) 6.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추는 것 (신설)
가축사육업		1. 가축사육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이거나 당해 가축사육시설에 환기시설을 갖추는 것 2. 양계업 중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임란간의 교배에 의하여 부화용 알을 생산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육용 씨수탉 및 산란용 임란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. 다만, 당해 사육시설의 바닥은 흙으로 할 수 있다. 3.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갖추는 것 (신설)

별 표 3

과태료부과기준(제27조 관련)

(단위 : 만원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		
		1회	2회	3회 이상
1.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6조제1항제1호	20	100	200
2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6조제1항제2호	50	200	300
3.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6조제1항제2호	10	50	200
4.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56조제1항제3호	100	200	300
5. 법 제22조제4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6조제1항제4호	10	100	200
6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56조제1항제5호	100	200	300
7.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56조제1항제6호	10	50	200
8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56조제1항제7호	10	50	200

(비고) 1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.  
 2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◎문제정의(배경과 개정사유)

■도입 배경

- 축산농가의 방역소홀 및 적정한 가축 사양관리 미흡으로 악성질병이 발생하거나, 확산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
  -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을 위해 축산업 등록 면적을 강화하고 등록대상축종 확대 필요함
- 열악한 가축사육 환경이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방역·위생·환경 등 축산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립할 수 있도록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방역의 필요성 제기

■개정사유

- 악성 가축전염병 질병으로부터 우리축산업을 보호·관리하기 위하여 축산업 등록대상을 종전 4개 축종(소, 돼지, 닭, 오리)에서 기타가축 8개 축종(산양, 면양, 사슴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, 타조) 사육 농가까지 확대하고, 부화업·종축업의 축산업 등록

시 갖춰야 할 시설·장비 기준을 강화하여 전염성 가축질병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◎규제의 신설·강화 필요성

■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도 구제역, 고병원성 AI, 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질병의 빈번한 발생으로 축산업계, 지역경제의 막대한 피해 및 국민생활에 불편 초래

- 2000년 이후 구제역(4회), AI(3회)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,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, 방역대책 추진 등에 정부 재정이 1조 2천억원이 투입
  - \*구제역 : (2000) 3,006억원, (2002) 1,434, (2010, 김포) 408, (2010, 강화) 1,588
  - \*고병원성 AI : (2003/2004) 1,531억원, (2006/2007) 582, (2008) 3,070
-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축산농가·외식업체 손실, 차단방역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및 불편 초래, 국가 이미지 하락 등 직·간접적 피해 발생

■규제 내용별 규제강화 필요성

규제 내용	규제 필요성
<p>■축산업 등록대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등록축종을 소, 돼지, 닭, 오리에서 산양, 면양, 사슴, 칠면조, 거위, 메추리, 꿩, 타조 까지 추가</li> <li>• 소사육업 등록면적을 300㎡초과에서 50㎡초과로 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빈번히 발생하는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축산업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가축사양관리 개선 등을 위해서는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모든 축종을 축산업 등록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</li> <li>• 돼지·닭·오리의 축산업 등록면적은 50㎡이나, 소는 300㎡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축종간 형평성 유지 필요</li> </ul>
<p>■축산업 등록기준 강화(축산법시행령 별표 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종란 훈증소독시설을 설치(부화업)</li> <li>• 환기시설의 설치(종돈업, 종계업)</li> <li>•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(종계업)</li> <li>• 종란보관실을 별도로 설치(종계업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농장 안에서 2차 감염을 방지하고 청정화 유지하기 위함</li> <li>• 적절한 환기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호흡기질병으로 농가에 분양되는 가축에 전염되는 등 문제점 발생</li> <li>• 외부 오염원으로부터의 질병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사항임</li> <li>• 종란의 청정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질병감염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병아리가 부화될 경우 분양 농가의 피해 발생</li> </ul>
<p>■축산업 등록기준 강화(축산법시행령 별표 3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축산업등록자 준수사항을 위반 할 경우 과태료부과 강화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1차 위반 : 3만원 → 10</li> <li>2차 위반 : 30 → 50</li> <li>3차 위반 : 100 → 200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축산업 등록농가는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를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과태료 부과기준이 경미하여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소홀하고, 농가 입장에서는 지키려는 의지가 미약함</li> </ul>